「실내건축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(안)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16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

1. 개정이유
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에 맞추어 건축물 실내에서 장애 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 나 심리적 장벽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로 · 계단 측면 끝부분에 방지 턱 · 홈 설치, 공용 복도에 피난 · 유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불연재료 등의 사용대상 조정(안 제4조제1항) 「건축법 시행령」개정('15.9.22)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, 거실의 바닥면적 200㎡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 불연재료 등의 설치대상에서 제외함
- 나. 낙하·미끄럼 방지를 위한 방지틱·홈 설치(안 제5조제4호) 낙하물 또는 미끄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용 계단, 경사로 측면 끝부분에 방지턱 또는 홈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
- 다. 실내 바닥단차 식별표시 설치(안 제5조제5호)

실내 바닥에 단차가 있는 경우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

라. 창호 개폐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(안 제6조제2항)

고층 건축물 등의 외기에 면하는 창호는 개폐시 추락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

3. 의견 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건축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molit.go.kr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나. 보내실 곳

○ 주소: (301-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418호

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

○ 전화(☎) 044-201-3763/ 팩스 : 044-201-5574